

미니시리즈

노동법 극장

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?

- 사내 왕따로 고통받는 K씨 이야기 -

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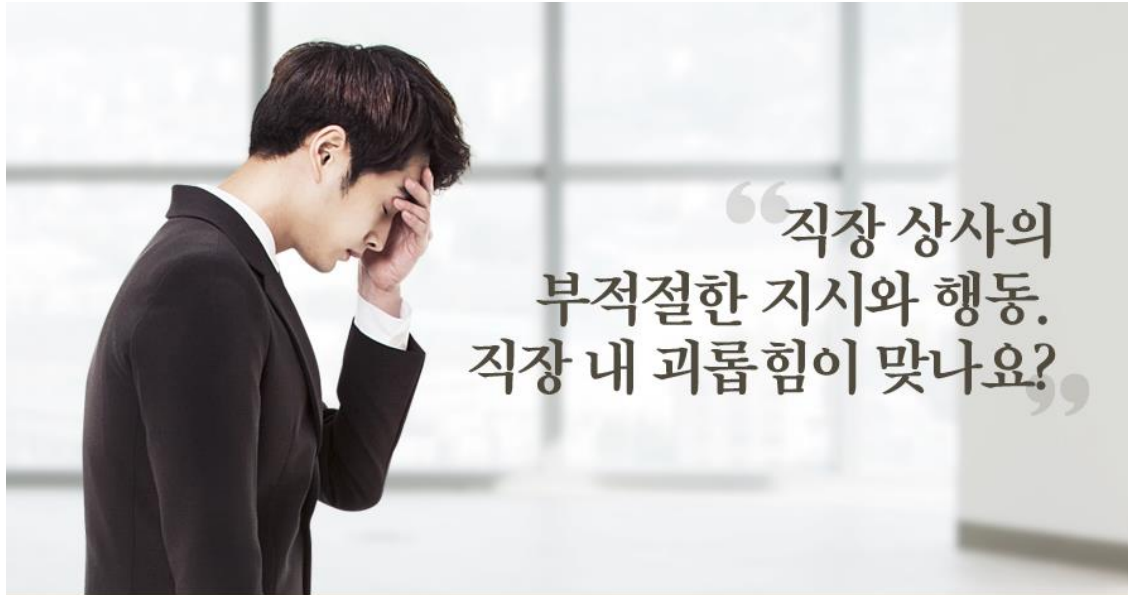


“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.
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
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.
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.
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
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?”

으이구.. 내가 새로운 직원때문에
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!!

또 내 얘기인가..?





“ 직장 상사의
부적절한 지시와 행동.
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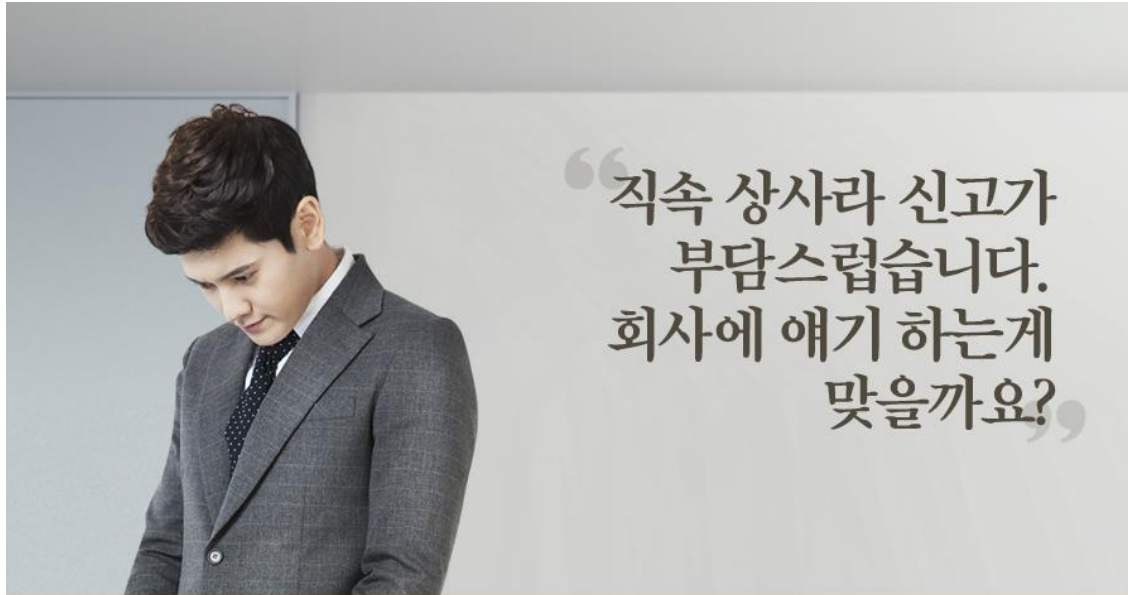
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직장에서의 지위(관계) 등의
우위를 이용할 것

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
행위일 것

정신적·신체적
고통을 주거나
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

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
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.



YES!

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
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때 회사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근무지 변경, 유급휴가,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
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.



“신고로 인해 회사에서
불이익을 받지 않을까
무섭습니다.”

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·피해 주장을 이유로
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.

**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 원 이하의 벌금**



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?

「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」에 문의하세요.

(전국 10개소 설치·운영 중)

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
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또한,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
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대표전화: 1522-9000

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

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로
밝은 일터를 만들어가요~



더 자세한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 <http://www.moel.go.kr>